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拒 絕 定

〈大法院 第2部 判決〉(1982. 3. 23)

裁判長：大法院判事 신 정 철
關與法官： " 강 우 영, 이 정 우

1. 審判請求人(上告人)：이희준(서울 도봉구 미아 6동 1268—263)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特許廳長
3. 原審決：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 6. 26字, 1979年 抗告審判(질) 第515號 審決
4. 主 文：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審判請求人の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이 事件 實用新案 登錄出願 考案인 不妊帶는 그 出願書에 添附된 明細書와 補正書에 添附된 대로 製作하여도 이를 着帶하여 起立, 據動하면 自然히 流入口가 閉鎖될 것이 豫想되어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데도 위 각 명세서 는 이에 관한 아무 설명도 보이지 않으니 이 事件 出願에는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實施할 수 있을 정도로 그 考案의 目的, 構成, 作用 및 效果를 說明하는 詳細한 說明書가 없는 경우에 該當하여 舊實用新案法(1980. 12. 31 改正된 法律) 第12條, 同施行令(1981. 7. 30 改正된 施行令) 第1條 第2項, 第4項에 어긋나는 出願일 뿐만아니라 오줌을 받기 위하여 着用하는 귀저귀를 3겹으로 제작한다는 고안은 생리대나 귀저귀를 만드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극히 容易하게 着案할 수 있는 程度의 것으로서 獨自의 인 創作性이 認定되지도 않는다는 理由로 이 事件 登錄出願을 拒絶한 事情을 維持하고 있는 바 記錄에 의하여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다고 보여지며 거기에는 所論의 審理未盡 등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論旨는 理由없다.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參 考 —

抗告審判

1979年 抗告審判(질) 第515號

抗告審判請求人：이희준

被抗告審判請求人：특허청장

主文：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